

임시총회의사록

1. 일 시 : 2020년 6월 25일(목요일) 10:00
2. 장 소 :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대강의장
3. 참석자 : 회원 12명(회원총수 15명)
 - 회 원 : 김점동, 현명진, 사유철, 배승룡, 김광현, 지영찬, 구희영, 하진범
김세영, 현병섭, 민히연, 이상태
4. 심의안건 :
 - [제1안건] 법인상호 변경의 건
 - [제2안건] 정관 변경의 건

5. 회의 내용

1)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○ 의장 김점동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,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2) 부의안건 상정

○ 의장이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.

【제1호 의안 : 법인명칭 변경의 건】

○ 의장이 본 법인의 사업 운영상 상호를 변경하고자 법인상호 변경의 건을 심의·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사무국장이 본 법인의 사업 운영상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다.

본 법인의 상호는 “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”로 “지원센터”라는 상호가

사업을 진행하는 데 법인으로써의 위상보다는 산하단체, 혹은 센터와 같은 이미지가 강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요청합니다.

○ 이상태회원 : 법인의 상호에 사업 관련 직관적인 단어가 나열되어 장점이 있지만, 사무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'지원센터'라는 이미지가 법인의 위상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
○ 배승룡이사 : 그간 구두상으로도 해당 안건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며 회원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다면 바로 명칭제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

○ 사유철이사 : 동의합니다.

○ 이상태회원 : 재청합니다.

○ 김점동의장 : 사유철이사의 동의와 이상태회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상호제안을 부탁드립니다.

○ 김광현회원 : 그동안 경기 북부에서 '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'라는 명칭이 오래도록 사용되었으므로 전혀 다른 상호보다는 '지원센터'를 삭제하고 '재단'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요?

○ 사유철이사 : '재단'이라는 상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?

○ 현명진이사 : 그간 구두상으로 해당 의견이 있어 이현태 법무사사무실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무국장이 사단법인들의 상호들을 조회해 본 결과 우리와 같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에 '재단'의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○ 김점동의장 : 그럼 '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'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○ 배승룡이사 : 동의합니다.

○ 이상태회원 : 재청합니다.

○ 김점동의장 : 배승룡이사의 동의와 이상태회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법인상호변경의 건은 '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'으로 결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【제2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】

○ 의장이 본 법인의 사업 운영상 정관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의 건을 심의·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사무국장이 본 법인의 사업 운영상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다.

첫 번째 앞서 제1호 의안에서 결정된 법인 상호변경과 관련되어 제1조(명칭) 변경입니다.

두 번째 제2조 목적에 나열된 대상자들은 제4조(사업)의 각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목적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
세 번째는 제14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에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 이는 사단법인들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의 임기를 갖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.

제1조(명칭)	
현행(삭제)	개정 후(추가)
이 법인은 사단법인 “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”(이하 “본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	이 법인은 사단법인 “나눔고용복지재단”(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	
현행(삭제)	개정 후(추가)
본 법인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한국사회의 노동복지발전을 도모하고, 고용복지향상을 위해 실업자, 비정규직 근로자, 북한이탈주민·다문화 가정의 구성원·고령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근로자(이하 “취약계층 근로자”라 한다) 및 이주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노동사회의 복지증진과 노사 간의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.	본 법인은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한국사회의 노동복지발전을 도모하고,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4조 (임원의 임기와 자격)	
현행(삭제)	개정 후(추가)
① 본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,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	① 본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 2년, 감사 2년으로 하고 각 연임할 수 있다.

- 김점동의장 : 사무국장이 설명한 정관변경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?
- 김세영회원 : 동의합니다.
- 이상태회원 : 재청합니다.
- 김점동의장 : 김세영회원의 동의와 이상태회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법인 정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6. 폐회선언

- 의장이 참석 이사와 회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다.(회의종료 11:00)

의결사항

1. 법인 상호를 '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'으로 변경하기로 의결.
2. 법인 정관을 제안내용대로 하기로 의결.

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 이사와 회원이 서명·날인함.

2020년 6월 25일

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

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11, 2층(의정부동, 유비토스빌딩)

의장 이 사 김점동 이 사 현명진 이 사 사유철

이 사 배승룡 회 원 김광현 회 원 지영찬

이 사 구희영 회 원 하진범 회 원 김세영

이 사 현병섭 회 원 민희열 회 원 이상태